

협회,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 발급업무 개시

- 협회, 환경부 고시 제2007-37호에 의거 특허·신기술시설 설치확인기관으로 지정
- 기술성 평가에 대한 분쟁조정 및 업체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경감예상

한국건설자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 2007-37호)' 및 협회정관 제5조 제13호에 근거하여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동 평가기준 별표1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 증빙서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서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업무 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동 업무를 본격시행, 기술 거래소 및 발명진흥회 등 기존의 평가기관의 업무 횡포 및 편법발급 등으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신속·정확하게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협회의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업무는 신기술·특허 등 2가지를 동시에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 약 50여 만원의 할인혜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효과와 신청접수 후 5일이면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타 기관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어 행정적 편의 제공, 발주자의 당

해용역 관련여부 및 건설폐기물 관련 처리기술 여부에 대한 협회의 검토자료 협조에 따른 분쟁조정 효과, 무분별한 기술협약 편법사례 등의 개선에 따른 시장질서 확립 및 자정노력 효과, 연 3회 사후관리를 통한 발주자의 적격심사 행정지원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기술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받은 기술평가기관임을 근거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이므로 특허이외의 환경·건설신기술에 대한 설치확인서의 경우 신뢰성의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환경부고시에 의거 명확하게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음은 물론 현장실사 시 건설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설명과 사업장 관리개선,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준비사항 등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어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협회의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규정에 따르면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방법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서류심사의 경우 신청업체의 설치·가동중인 기술적용시설 배치도, 공

정도 및 특허등록원부, 신기술 지정·검증서, 사용협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설치확인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심사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의 기술적용시설이 설치되어 가동중인지 여부를 협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게 된다.

또한 타 기관과는 달리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 3회에 걸쳐 사후 점검이 실시되며, 사후점검 결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이 미달할 경우 설치확인이 취소될 수 있다.

협회의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신청서 서식에 따라 기술적용시설 배치도 및 공정도, 특허등록원부, 전용 실시권설정계약서, 신기술 지정·검증서 또는 사용협약서, 사업자 등록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 일정 및 수수료를 통보한다.

통보받은 업체가 부과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협회의 심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적합여부 판정이 부여되면 신청업체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즉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다만, 검토의견서에 대한 적합여부 판정시 필

요한 경우 협회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확인서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협회의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 발급이후, 시설의 설치 또는 협약기간의 종료나 변경과 같은 변동사유가 있는 업체는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협회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치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3회 사후점검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 발급된 설치확인서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최초 설치확인서 발급을 위한 심사만을 강조하는 반면 재발급에 따른 확인업무가 요식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타 기관의 설치확인업무와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치확인서의 신뢰도를 충족시키는 물론 업체로 하여금 스스로 시설·장비를 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입찰행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대하게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타 기관의 횡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협회는 동 업무를 1년정도 수행 한 후 설치확인 수수료를 최고 현행 수준의 50%정도까지 인하하여 업체들이 느끼는 경제적부담을 완전히 해소시킬 계획이다.

강한서 기자(khsmartin@koras.org)

확인 발급기관	최초 설치확인료	재 확인료	유효기간	연간 업체부담액(신기술·특허)
한국발명진흥회	100만 원/건	50만 원/건	6개월	150(1건) ~ 300만원(2건)
한국기술거래소	200만 원/건	70만 원/건	6개월	270(1건) ~ 540만원(2건)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100 만원/건		1년	100(1건) ~ 200만원(2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00 만원/건		1년	100(1건) ~ 200만원(2건)
한국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기관등록은 되어 있지만 기술설치확인 업무는 채산성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한국건설자원협회 (2007.4.1 시행)	90만 원/건		1년 (연 3회사후 관리점검)	90 ~ 150만 원

〈타 기관 운영실태 비교표〉



〈신기술·특허기술이 적용된 처리시설〉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
 - 협회 홈페이지(www.koras.org) 공지사항 및 자료실(기타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 기술적용시설 배치도 및 공정도
 - 특허등록원부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 신기술 지정·검증서 또는 사용협약서

- 제출처
 - 협회 기획홍보팀 : FAX 02-3476-8464 또는 우편접수